

특정감사

특정감사결과보고서

- 해외 초청연수사업 경비지출 관련 -

2014. 4.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. 감사실시 개요 | 1 |
| 1. 감사목적 | 1 |
| 2. 감사대상 및 범위 | 1 |
| 3. 감사중점 | 1 |
| 4. 감사기간 및 인원 | 1 |
| II. 초청연수사업 현황 | 2 |
| 1. 사업추진 목적 | 2 |
| 2. 공사 초청연수사업 추진현황 | 2 |
| 3. 초청연수사업 흐름도 | 3 |
| 4. 공사 및 KOICA 강사료 지급 기준 | 3 |
| 5. KOICA 연수경비 정산 기준 | 4 |
| 6. KOICA 연수경비 정산 기준 개선 | 4 |
| III. 감사결과 | 5 |
| 1. 총평 | 5 |
| 3. 지적사항 총괄 | 5 |
| 3. 지적사항 요약 | 6 |
| III.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| 8 |
| IV. 기타사항 | 8 |

I .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목적

□□원 □□부에서 수행하는 해외 초청연수사업 수행과정에 내부직원에게 지급된 강사료, 인건비, 통역비 등이 공사 예산집행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국제협력단(KOICA)¹⁾ 연수사업 경비정산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함으로써 앞으로 사업 운영 시 예산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경비집행 실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.

이에 해외 초청연수사업 경비집행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감사를 실시하였다.

2. 감사대상 및 범위

□□원 □□부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한 해외 초청연수사업 경비집행 전반을 감사하였다.

3. 감사중점

이번 감사에서는 해외 초청연수사업에 대하여 내부직원 조력행위^{강의, 통역 등}에 대한 대가 지급기준 마련과 사업에 참여한 내부직원의 복무관리 등 제 규정^{예산집행지침, 행동강령 등} 준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 해외 초청연수사업의 경비집행 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

3. 감사기간 및 인원

이번 감사를 위하여 2014. 3. 24.부터 같은 해 3. 26.까지 3일간 예비 조사를 한 후 같은 해 3. 27.부터 같은 해 4. 1.까지 4일간 감사인원 2명이 실지감사를 하였다. 그 후 감사실·청렴윤리부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2014. 4. 9. 감사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.

1) 한국국제협력단(KOICA: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):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 등 특정협력 대상 국가들에 대해 우리의 인력과 자원을 제공하여 그들 국가의 경제·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인도적 견지에서 최빈국 주민의 복지향상 활동을 위한 단체.

II. 해외 초청연수사업 현황

1. 사업추진 목적

- 국내 지적제도, 공간정보 구축 및 개발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
- 개도국 인적자원개발(HRD), 조직역량 강화 및 제도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 스스로 개발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배양 지원
- 개도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통한 공사 해외사업 수주 등 관련 사업 활성화

2. 공사 해외 초청연수사업 추진 현황

- □□원 □□부에서는 해외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2011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(KOICA)의 공적개발원조(ODA)²⁾ 중점 협력국가 및 공사 해외사업 대상국에 대한 초청연수과정 위탁사업을 주관하고 있음.

| No | 과정명 | 기간 | 주관부서 | 초청인원 | 소요예산(천원)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
| 1 | 나이지리아지 지적공무원 초청연수 | 11. 24. ~ 12. 7. | □□부 | 20 | 19,299 |
| 2 | 자메이카 실무자 초청연수 | 10. 13. ~ 10. 26. | □□부 | 10 | 85,546 |
| 3 | 우즈베키스탄 실무자 초청연수 | 7. 14. ~ 7. 26. | □□부 | 9 | 68,557 |
| 4 | 자메이카 관리자 초청연수 | 7. 7. ~ 7. 13. | □□부 | 5 | 34,544 |
| 5 | 우즈베키스탄 관리자 초청연수 | 6. 18. ~ 6. 26. | □□부 | 4 | 31,962 |
| 6 | 필리핀 관리자 초청연수 | 4. 15. ~ 4. 28. | □□부 | 9 | 21,865 |
| 7 | 투르크메니스탄 실무자 초청연수 | 8. 22. ~ 9. 4. | □□부 | 13 | 75,984 |
| 8 | 투르크메니스탄 관리자 초청연수 | 5. 29. ~ 6. 8. | □□부 | 4 | 34,651 |

2) 공적개발원조(ODA: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):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개도국에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성 차관. 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함

3. 해외 초청연수사업 흐름도

| 단 계 | 주 체 | 내 용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 약 | 공사 - KOICA | KOICA 요청 |
| ↓ | | |
| 연수실시 | 국제협력부 | 연수원에서 교육, 공사소개, 산업시찰 등 |
| ↓ | | |
| 연수경비 지출 | 공사 예산(부대사업비) | 강사료, 인건비 등 직원에게 지급 |
| ↓ | | |
| 연수경비 청구 | 공사에서 청구 | 개인 지급사실을 증빙 |
| ↓ | | |
| 연수경비 검증 | KOICA 회계법인 | KOICA 초청연수사업 정산기준 |
| ↓ | | |
| 연수경비 수입 | KOICA | 정산 후 공사에 송금 |

4. 강사료 지급 기준

○ 공사 예산집행지침 내부강사료 지급 기준

| 지급 대상 | 2012. 8. 1. 이전 | | 2012. 8. 1. 이후 |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| 최초1시간 | 1시간초과 | 최초1시간 | 1시간초과 | |
| 사장, 감사 | 250천원 | 250천원 | 300천원 | 200천원 | - 1일 4시간이상 강의시간은 4시간을 한도로 적용 - 강의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에게는 지급 제한(2012. 8. 1. 개정) |
| 상임이사 | 200천원 | 200천원 | 300천원 | 200천원 | |
| 본부장 | 100천원 | 100천원 | 230천원 | 120천원 | |
| 1급, 2급직원 | 70천원 | 70천원 | 120천원 | 100천원 | |
| 3급 이하 직원 | 50천원 | 50천원 | 70천원 | 50천원 | |

○ KOICA 초청연수사업 강사료 지급 기준

| 구분 | 강사료 (원고료 포함) | 지급대상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|
| 1급 | 350천원 |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, 전·현직 대학교총장, 전·현직 공공기관장, 전·현직 국회의원 및 대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|
| 2급 | 300천원 | 2, 3급 상당 이상 공무원, 박사학위를 소지한 4·5급 공무원, 정(부)교수급, 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 및 중역, 전문직(전문분야) 경력15년 이상 보유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 |
| 3급 | 250천원 | 4급, 5급 상당 이상 공무원, 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, 조교수 및 전임강사, 연구원급, 전문직(전문분야) 경력 10년 이상 보유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 |
| 4급 | 200천원 | 상기 1-3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|

※ 한국어로 강의時 위 대가의 60% 지급

5. KOICA 연수경비 정산 기준

- (강사료) “연수기관 소속 내부강사의 경우, 내부강사료 총 금액이 작성된 기관발행 영수증도 가능”(기관수입 근거)
- (인건비 등) 기관 성격에 따라 별도 정산(기관수입 근거)

| 항목 | 정산구비서류 |
|-----------|---|
| 강사료 | ○ 강사 서명 영수증 또는 송금증 ※ 연수기관 소속 내부강사의 경우, 내부강사료 총액이 작성된 기관발행영수증도 가능 |
| 연수전담자 인건비 | ○ 기관별 성격에 따라 별도 정산 - 공공기관은 집행자료 첨부하여 정산보고 |

6. KOICA 연수경비 정산 기준 개선

- 해외 초청연수사업 내부강사료 지급 관련 질의회신 결과

<질의 내용>

1. KOICA(한국국제협력단)에서 ◇◇시 인재개발원에 위탁한 교육 과정에서 ◇◇시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 “KOICA 강사료 지급기준”에 의거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?

<검토 의견>

1. 강의를 지급할 경우 KOICA의 지급기준을 따를지, ◇◇시 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을 따를지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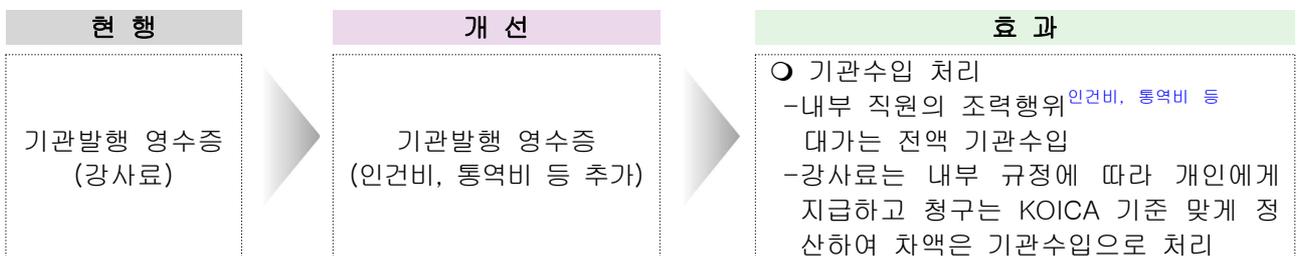
2. KOICA가 ◇◇시 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을 위탁하고

-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허용되므로(국가공무원 복무, 징계 관련 예규 제11장), 공문서에 드러난 요청자를 기준으로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.

※ 공문서 상의 요청자가 KOICA일 경우 외부강의이고, ◇◇시 인재개발원일 경우 내부강의로 판단

3. ◇◇시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라면 「◇◇시 공무원 행동강령」이 정하는 대가 상한선 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를 받을 수 없음.

- KOICA 연수경비 정산기준 개선 요청



- 2014. 4. 2.(수) 17:30 KOICA 규정담당자 협의 내용

*정산이 완료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산이 불가하니 기관 형편에 맞게 처리하고, 앞으로는 규정 개선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구체화

II. 감사결과

1. 총평

□□원 □□부에서는 해외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2007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(KOICA)의 공적개발원조(ODA) 중점 협력국가 및 공사 해외사업 대상국에 대한 초청연수과정 위탁사업을 주관하고 있다.

그러나 해외 초청연수사업 연수경비 정산과정에서 내부직원의 강사료, 인건비, 통역비 등은 KOICA 연수사업 경비정산 기준에 공사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공사 예산집행지침과 다르게 직원 개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앞으로 초청연수사업 운영에 예산낭비 및 내부직원이 제 규정 예산집행지침,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대·내외적으로 비난받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

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에서는 해외 초청연수사업에 대하여 내부직원 조력행위 강의, 통역 등에 대한 대가 지급기준 마련과 사업에 참여한 내부직원의 복무관리 등 제 규정 예산집행지침, 행동강령 등 준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 해외 초청연수사업의 경비집행 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

2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천원)

| 구분 | 총괄 (계) | 행정상조치 | | | | 재정상조치 | | 신분상조치(인원) | | | 현지 처분 | 제도 개선 | 모범 사례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|----|----|--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| 통보 | 시정 | 개선 | 권고 | 회수 | 지급 | 징계 | 문책 | 고발 | | | |
| 건수 (인원) | 5 (0) | 0 | 0 | 1 | 0 | 4 | 0 | 0 (0) | 0 (0) | 0 (0) | 0 | 0 | 0 |
| 금액 | 21,566 | 0 | 0 | 0 | 0 | 21,566 | 0 | | | | | | |

3. 지적사항 요약

1 해외 초청연수사업 교수직 강사료 지급 부적정

< 요약 >

- ☉ 공사 예산집행지침 [2012.08.01. 개정](#) 강사료 지급기준(12페이지)
- ☉ KOICA 연수사업 경비정산 기준(237페이지)
- ☉ 기획재정부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

[[Ⅲ. 비목별지침 / 1.운영비(210목) / 1-1. 일반수용비(210-01목) / 사.]

- ☞ 해외 초청연수사업에 강의를 전담으로 하는 지적연수원 교수를 활용하여 행사진행 및 강의 등의 조력행위에 대한 대가를 공사 예산집행지침 강사료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하였음.
- ☞ 또한, KOICA 연수사업 경비정산기준에 내부강사를 활용한 경우에는 기관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개인에게 지급하는 등 제 규정 준수에 소홀하였음.

2 해외 초청연수사업 내부직원 강사료 지급 부적정

< 요약 >

- ☉ 공사 예산집행지침 [2012.08.01. 개정](#) 강사료 지급기준(12페이지)
- ☉ KOICA 연수사업 경비정산 기준(237페이지)

- ☞ 해외 초청연수사업에 국제협력부·본부·지사 직원을 활용하여 행사진행 및 강의 등의 조력행위에 대한 대가를 공사 예산집행지침 내부강사료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하였음.
- ☞ 또한, KOICA 연수사업 경비정산기준에 내부강사를 활용한 경우에는 기관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개인에게 지급하는 등 제 규정 준수에 소홀하였음.

3**해외 초청연수사업 내부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****< 요약 >**

- ⊙ KOICA 연수사업 경비정산 기준(237페이지)
- ⊙ 기획재정부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
[[Ⅲ. 비목별지침 / 1.운영비(210목) / 1-1. 일반수용비(210-01목) / 사.]

- ☞ 해외 초청연수사업에 국제협력부 직원의 조력행위 **통역, 인건비 등**에 대하여 연수전담자 인건비와 통역비 명목으로 공사 예산집행지침에 지급 근거 없이 개인에게 지급하여 복무관리에 소홀하였음.
- ☞ 또한, KOICA 연수사업 경비정산기준에 연수전담자 인건비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별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관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지급하여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 규정 준수에 소홀하였음.

4**해외 초청연수사업 내부직원 출장자 복무관리 소홀****< 요약 >**

- ⊙ 임직원 행동강령 제36조 제6항(강의대가 수급자 출장여비 지급제한)

- ☞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·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며, 내·외부 강의·강연 등에 대한 활동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출장여비 지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초청연수사업에 조력행위로 인한 대가와 출장여비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등 제 규정 준수에 소홀하였음.

Ⅲ.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

1. 처분요구사항 일람표

(단위 : 천원)

| 처분지시 일련번호 | 감사대상기관 (관계기관/부서) | 건 명 | 처분요구 | | | 조치 기한 | 감사자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| | 행정상 조치 | 재정상 조치 | 신분상 조치 | | |
| 5 - 1 | 공간정보연구원 국제협력부 | 해외 초청연수사업 내부직원 조력행위 대가지급 개선 | 개선 | | | 2개월 | 청렴윤리부장 외 1인 |
| 5 - 2 | | 해외 초청연수사업 교수직 강사료 지급 부적정 | | 회수 16,264 | | 1개월 | |
| 5 - 3 | | 해외 초청연수사업 내부직원 강사료 지급 부적정 | | 회수 2,279 | | 1개월 | |
| 5 - 4 | | 해외 초청연수사업 내부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 | | 회수 2,900 | | 1개월 | |
| 5 - 5 | | 해외 초청연수사업 내부직원 출강자 복무관리 소홀 | | 회수 123 | | 1개월 | |

Ⅳ. 기타사항

1. 향후 처리계획 및 특기사항

-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
- 2014년 시행하는 관련 사업 사후관리 이행점검 실시

[별 첨]

1.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5부.
2. 감사심의조정위원회 의결서 1부. 끝.